

2016년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서식

희망두배 청년통장 관련서식(1~8호)

[제1호] 희망두배 청년통장 가입 신청서

[제2호] 희망두배 청년통장 가입 안내문

[제3호] 가구원소득신고서

[제4호] 금융거래정보제공동의서

[제5호]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제6호] 고용·임금 확인서

[제7호] 일용근로 사실 확인서

[제8호]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자별 제출서류

근로소득자(7종) : ①~⑦의 근로소득 확인서류 제출

① 희망두배 청년통장 가입신청서 : 신청자 본인 직접 작성, 신청자 사진 1매 필요

② 주민등록등본 : 동 주민센터 자체 발급

③ 가구원 소득신고서 : 신청자 본인 직접 작성(동일가구원 중 소득이 있는 부모·배우자 정보 작성)

④ 금융정보제공동의서 : 참가자 및 동의자 직접 서명(참가자 및 동의자의 신분증 지참 필수)

☞ 작성대상 : 본인 및 부모·배우자 전원

※ 동일가구여부와 관계없이 세대가 분리되어 있을 경우에도 포함 작성

☞ 신분증 :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장애인증 등 공공기관 발행 신분증

⑤ 개인정보제공동의서

⑥ 근로소득 증빙서류(다음 중에서 해당 있는 서류 제출)

- 근로소득원천징수확인서 : 최근 1년간 근로소득 내역이 표기된 확인서

- 고용·임금확인서 : 현재 고용되어있는 사업장의 고용주로부터 발급

☞ 근로소득원천징수확인서 발행이 불가능하거나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사업소득자
(학습교사, 보험회사종사원, 학원강사 등)

- 일용직 근로내역확인서 : 건설현장 일용직 등 고용보험에 가입된 일용직 근로자
(고용지원센터 발급, 재직증명서 갈음 가능)

- 경력증명서(건설근로자공제회 발행) : 건설현장 일용직 근로자
(건설근로자공제회 발급, 재직증명서 갈음 가능)

- 일용근로 사실확인서 : 일용직 근로자 중, 근로경력은 있으나 재직 및 근로소득 증빙서류 등의 제출이 곤란한 자, 재직증명서 갈음 가능

※ 자영업자는 사업자등록증 및 소득증빙 서류 제출

※ '일용근로 사실확인서' 징구 대상자는 서류접수 후 공적자료(행복e음)를 조회하여 근로소득이 확인될 경우, 조회된 기간만큼 근로경력 인정함

⑦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개인회생증인 자

○ 위 서류 외에 개인회생결정문(사본)

○ 12개월 이상 채무변제확인서(법원 발급), 워크아웃(신용회복위원회)인 경우 10개월 이상 채무변제확인서 제출

※ 필요시, 임대차계약서, 자동차 보험증서(해당자) 등 재산에 관한 증빙자료 징구 가능

【붙임 제1호】

『희망두배 청년통장』 가입신청서

<p>☞ 빈칸에 기입하거나, □에 √표 하세요. 모든 금액 단위는 원으로 기재하세요.</p> <p>☞ 아래 칸에 충실히 작성해 주시기 바라며, 공란이 있을 경우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없음, 0원 등 명시) ※ 음영(■)부분은 본인 작성 제외란입니다(자치구에서 확인후 기재).</p> <p>☞ 신청자는 추후 서울시복지재단 및 지역별 사례관리기관과 연락관계를 가지며, 선정 후 금융교육 등 정해진 프로그램에 의무적으로 참석해야 합니다.</p> <p>※ 희망두배 청년통장 관련 문의 : 다산콜센터 120(국번없이)/접수처 : 주소지 동 주민센터</p>	<p>신청자 본인 증명사진 (2.5cm×3.0cm)</p> <p>※ 면접심사시 본인확인</p>
---	--

자치구 확인란	소득·재산 조사 결과	□ 기준중위소득 80% 이하(부모 및 배우자) ※ 생계, 의료, 주거, 교육 수급가구 제외	확인자 구: _____(인) 동: _____(인) ※ 주민센터 담당 및 자치구 담당자 날인
	가구특성 (중복체크 가능)	□ 장애인/장애인 부양 □ 조손가정 □ 자녀이상 □ 국가보훈대상자 □ 다문화가정 □ 새터민가정 □ 65세이상 어르신부양 □ 자활근로자 □ 일반저소득가정 □ 기타()	

본인 작성	저축 기간	24개월 □ 36개월 □	월 저축금액	5만원 □ 10만원 □ 15만원 □	※ 본인저축액에 대한 근장려금 50% 지원
	저축 목적	다음 중 하나를 선택하여 √ 해주세요 ※ 저축기간중 목적변경 가능 □ 주거자금 □ 창업자금 □ 본인의 고등교육 및 직업훈련비 □ 결혼자금			

※ 저축액 및 저축목적은 약정시 변동 불가하므로 신중히 체크필요

I. 기본정보

신청자 기본 인적 사항	신청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
	주소	□□□-□□□□ *****			전화(집) : 휴대폰 :
	서울시 거주기간	년	개월	※ 서울시에 연속거주한 기간(타사도 이주 후 다시 서울시로 전입한 경우에는 재전입한 날부터 계산)	
	비상연락망	관계	성명	연락처	
	결혼상태	□ 미혼 □ 기혼 □ 이혼 □ 사별 □ 기타			
근로상황	재직기간	□ 6개월 이상 □ 1년 이상 □ 2년 이상 □ 3년 이상			
	병역	□ 필 □ 미필 □ 해당사항없음			
가족상황 (신청자 본인의 정보도 기재함)	직업	근무처명			
	근무처 주소	□□□-□□□□ *****			전화 :

가족 상황 (신청자 본인의 정보도 기재함)	부양가족수 (신청자제외) 총__명 •65세이상__명 •장애인__명	성명	연령	관계 <별지>	학력1 <별지>	학력2 <별지>	직업 <별지>	건강상태 <별지>	장애유형 (등급) <별지>	동거여부 (○/×)	
										()	
											()
											()
											()

※ 주민등록등본에 따라 작성하되, 신청자의 배우자와 자녀는 세대별 시제도 포함하여 작성

[가입신청서 뒷면]

☞ 아래 칸에 충실히 작성해 주시기 바라며, 공란이 있을 경우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가 구 의 자 산 수 준	거주형태	□자가(원) □월세(보증금: 원/월세 : 원) □전세(원) □국민임대주택(보증금: 원/월세 : 원) □무상거주(소유자: □부모 □형제 □친척 □지인) □기타()		
	주택유형	□단독주택 □다가구/다세대주택 □일반아파트 □영구임대아파트 □국민임대아파트 □오피스텔 □버거주용 주택(상가, 공장, 창고 등) □기타()		
	자동차	□있음(차종 : / cc/ 년식) □없음		
	금융자산	□예.적금(총 원) □보험금(총 원) □없음		
	부채상황	□총 대출금액(원, 대출사유 :) □없음		
기타자산	□있음(내역 : , 금액 : 원) □없음			

가 구 소 득 사 항 (최근 1년간 월평균 소득)	본인	급여: 월평균 원/ 기타소득: 월평균 원, 내역()
	배우자	급여: 월평균 원/ 기타소득: 월평균 원, 내역()
	기타	급여: 월평균 원/ 기타소득: 월평균 원, 내역()
	총수입액	월평균 원 (급여 및 기타소득 포함)

가구 지출사항 (최근 1년간 월평균 지출)	생활비: 원	교육비: 원	의료비: 원
	저축/보험: 원	※ 총 지출액: 월 평균 원	

동일세대원의 재산, 소득, 지출사항을 합산 기재하되, 부모 및 배우자가 세대분리시에도 가구 재산수준 및 소득사항, 지출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함

II. 적립계획 및 사용계획

신청동기 · 저축액 마련계획 · 저축액 사용계획	<p>* 저축목적은 주거, 소규모창업, 본인의 취업교육 및 고등교육비, 결혼자금 중 하나의 목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나의 목적을 선택하시고 왜 그 목적을 선택하셨는지 자세히 기재 (※ 부채 상환 목적으로는 불가, 학자금 제외)하시고, 저축액 마련 계획 등도 포함 바랍니다.</p>
--	---

1. 위 기재사실 및 제출서류에 허위가 있는 경우 선정이 취소될 수 있으며,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는 것에 동의합니다.
2. 위의 내용 및 별지 사업 공고문과 신청 안내문을 확인하였고 해당내용에 동의합니다.
3. 본인은 희망두배 청년통장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본인 및 가족의 인적사항, 소득, 재산 등의 확인을 위하여 정보조회를 하는 데 동의합니다.

위와 같이 '희망두배 청년통장' 가입을 신청합니다.

2016 . . .

신청자 성명 (서명)
※ 필히 신청자 본인의 서명 또는 도장 날인하여야 합니다.

()구  서울복지재단

<가입신청서 별지>

※ 가입신청서 중 가족사항 굵은 테두리 안의 항목에 대한 선택지입니다. 아래 표를 참고하여 해당 번호를 신청서 해당칸에 기입해주세요.

<가족상황 선택지>

관계	학력1	학력2	직업	건강상태	장애유형
1. 본인	1. 미취학(만7세 미만)	1. 재학	1. 상용직	1. 아주 건강함	1. 지적장애
2. 배우자	2. 무학(만7세 이상)	2. 휴학	2. 임시직(계약직)	2. 건강한 편	2. 뇌병변장애
3. 자녀	3. 초등학교	3. 중퇴	3. 일용직	3. 보통	3. 시각장애
4. 부모님	4. 중학교	4. 수료	4. 자활/공공/노인일자리	4. 건강하지 않은 편	4. 청각장애
5. 형제자매	5. 고등학교	5. 졸업	5. 자영업자	5. 매우 건강하지 않음	5. 언어장애
6. 친인척	6. 전문대학		6. 무직		6. 정신지체
7. 지인	7. 대학교				7. 발달장애
	8. 대학원(석사)				8. 정신장애
	9. 대학원(박사)				9. 건강장애(심장, 간 등)
					10. 비등록장애인
					11. 기타()

【붙임 제2호】

『희망두배 청년통장』 가입안내문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다음과 같이 운영됩니다. 신청전 반드시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희망두배 청년통장이란?

○ 참가자의 소득수준에 따라 3년간 또는 2년간 매월 근로소득으로 저축하는 금액의 1/2금액을 시 예산 및 시민의 후원금 등으로 적립 지원하여 드리는 통장입니다.

2. 신청자격 : 아래 ①~③ 조건 중 1개 이상 충족하는 경우(신용불량일 경우 ④ 요건 충족)

- ① 공고일('16.3.25) 기준 서울특별시 거주자(만 18세 이상 만 34세 이하 1982.3.25 ~ 1998.3.25 출생)
- ② 공고일('16.3.25) 기준 본인 소득금액이 세전 200만 원 이하 이며, 부양의무자(부모 및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인 자

※ 미혼의 경우 형제·자매/ 기혼의 경우 자녀는 가구원수에 포함/ 소득은 미반영

③ 공고일('16.3.25)기준 최근 1년간('15.3월 ~ '16.2월) 6개월 이상 근로한 자(총 72일 이상), 또는 신청일 현재 재직 중인 자 (자영업자 및 사업소득자 포함. 단, 사업자등록증 소지자 또는 사업소득 수입 증명 사실 확인가능자)

④ 공고일 기준 법원파산 면책결정자, 개인회생 중인가자로 12개월 이상 채무변제자, 개인워크아웃 중인가자로 10개월 이상 채무 변제자

❖ 신청자격 제외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신청인 본인의 부채가 5천만원 이상인 자(학자금, 전세자금 대출 제외)
- 신청자 본인이 신용불량자인 경우(신청자격 조건에 해당되지 않는 자)
- 기존 ‘희망플러스통장·꿈나래통장’ 참여자 참가가구원(졸업가구와 중도해지가구 포함)
- '16년 ‘희망플러스통장·꿈나래통장’ 신청 가구
- 보건복지부 자립지원 사업(희망키움통장 I·II, 내일키움통장 등) 참가가구
(보건복지부가 추진하는 아동교육목적인 ‘디딤씨앗통장’ 참가가구는 중복가입 가능)

3. 적립내용

월 적립금액(단위 : 만원)		총 적립금 (최대금액/3년)	비 고
가입자 납입금	근로 장려금 (시비+민간후원금)		
5, 10, 15	2.5, 5, 7.5	810만원+이자	

- 적용금리 : 24개월 2.7%, 36개월 2.9%
- 저축방법 : 매월 25일 자동이체
- 계좌개설 : 임의해약 방지를 위해 서울시복지재단 명의(참가자 구분) 개설

4. 참가자 선정

○ 본 사업은 제한된 예산으로 실시되는 자산형성 사업으로 소득 및 자산조사, 금융정보 조회, 서류심사, 면접심사 등을 통해 일정한 인원을 선발하게 됩니다. 따라서 가입자격이 되어 신청서를 제출하여도 사업 참가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자치구 및 주민센터에서 본 사업의 참가자격 확인을 위한 소득·자산 증빙자료 요구시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일체의 제출서류는 반납하지 않습니다.)

☞ 지방세 체납 등 저축액 압류 가능성이 있는 경우 참여가 제한될 수 있으며, 신청 접수시 본 사항도 함께 확인합니다.

5. 참가자 의무사항

○ 기본사항

☞ 본 사업의 참가자로 선정된 분은 사업수행기관인 서울시복지재단과 저축관련 약정을 체결하게 되며, 약정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합니다.

☞ 사업 참가자는 서울시복지재단에서 주최하는 금융교육(연간 1회)을 필수적으로 이수하여야 하며, 기타 특별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합니다.

☞ 서울시복지재단과 사례관리기관(참가자로 선정시 별도공지)의 요청이 있을 시, 상담에 응하여야 하며, 기타 제반사항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저축유지 관련

☞ 사업 참가자는 최초 지원이 이루어진 날로부터 약정기간(2년, 3년)동안 매월 저축액을 적립하여야 합니다. (자동이체를 권장하며, 저축액 미납부시 해당 월 근로장려금 지원불가)

☞ 다음의 경우에는 중도해지되며, 이 경우 본인 저축액과 이에 따른 이자만 지급됩니다.

- ① 본인 희망시, ② 금융교육 불참, ③ 연속 3회 이상 또는 총 7회 이상 미저축, ④ 다른 사·도로 이주, ⑤ 근로소득이 아닌 차입 등으로 저축, ⑥ 재산조회시 근로소득이 최저생계비 70% 이상 미충족 ⑦ 선정당시 은닉한 소득·자산이 있는 경우

☞ 또한, 통장가입기간 중 근로기간에 따라 근로장려금은 아래와 같이 차등 지급됩니다

근로기간(%)	30~50미만 근로	20~30미만 근로	10~20미만 근로	10미만 근로
지급비율(%)	80%	70%	50%	없음

☞ 사업참가시 총 2종의 통장이 개설되며, 2종 모두 참가자 본인의 임의 해약을 방지하기 위하여 서울시복지재단 명의로 개설됩니다.(본인 저축액이 적립되는 저축액 납입통장은 참가자 본인이 보관·관리하고, 근로장려금이 적립되는 통장은 서울시복지재단에서 별도 관리합니다.)

☞ 저축적립액은 사업종료 후 심사·지급되며, 사업목적 외의 타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사업종료 후 이용계획에 대한 서울시복지재단의 사전 승인을 받으셔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참가자 선정 후 저축 중도해지 시, 희망두배청년통장, 희망플러스통장, 꿈나래통장의 재신청은 불가합니다.

6. 본 사업 저축액 사용처 안내

○ 희망두배 청년통장 저축 적립금은 주거자금, 소규모창업, 본인의 교육비, 결혼자금으로만 사용할 수 있음

【붙임 제3호】

『희망두배 청년통장』 가입자 가구원 소득신고서

○ 가구원 정보(부모 및 배우자) ※ 주민등록상 거주를 함께 하지 않아도 작성

연번	신청인과의 관계	성명	연령	소득여부 (공고일 기준)	미소득시 사유
1				<input type="checkbox"/> 있음 <input type="checkbox"/> 없음	<input type="checkbox"/> 학업 <input type="checkbox"/> 질병·장애 <input type="checkbox"/> 육아 <input type="checkbox"/> 기타()
2				<input type="checkbox"/> 있음 <input type="checkbox"/> 없음	<input type="checkbox"/> 학업 <input type="checkbox"/> 질병·장애 <input type="checkbox"/> 육아 <input type="checkbox"/> 기타()
3				<input type="checkbox"/> 있음 <input type="checkbox"/> 없음	<input type="checkbox"/> 학업 <input type="checkbox"/> 질병·장애 <input type="checkbox"/> 육아 <input type="checkbox"/> 기타()
4				<input type="checkbox"/> 있음 <input type="checkbox"/> 없음	<input type="checkbox"/> 학업 <input type="checkbox"/> 질병·장애 <input type="checkbox"/> 육아 <input type="checkbox"/> 기타()

○ 가구원 소득활동정보(현재 소득이 있는 가구원만 작성)

연번	성명	구분	소득활동내용	
			취업상태	소득활동내용
1		취업상태	<input type="checkbox"/> 상시근로자 <input type="checkbox"/> 임시·일용직(피플류, 알뜰부 등) <input type="checkbox"/> 자영업(노점·행상 등) <input type="checkbox"/> 기타	
		직장(사업장)명	※자영업의 경우 사업등록증 발급여부(<input type="checkbox"/> 발급 <input type="checkbox"/> 미발급)	
		직장(사업장)주소		
		근무기간	. . . ~ . . . (. . . 년 . . . 개월)	
	월 평균 소득 (최근 3개월)	. . . 원 (최근 3개월 평균 근로일수 : . . . 일)		
2		취업상태	<input type="checkbox"/> 상시근로자 <input type="checkbox"/> 임시·일용직(피플류, 알뜰부 등) <input type="checkbox"/> 자영업(노점·행상 등) <input type="checkbox"/> 기타	
		직장(사업장)명	※자영업의 경우 사업등록증 발급여부(<input type="checkbox"/> 발급 <input type="checkbox"/> 미발급)	
		직장(사업장)주소		
		근무기간	. . . ~ . . . (. . . 년 . . . 개월)	
	월 평균 소득 (최근 3개월)	. . . 원 (최근 3개월 평균 근로일수 : . . . 일)		
3		취업상태	<input type="checkbox"/> 상시근로자 <input type="checkbox"/> 임시·일용직(피플류, 알뜰부 등) <input type="checkbox"/> 자영업(노점·행상 등) <input type="checkbox"/> 기타	
		직장(사업장)명	※자영업의 경우 사업등록증 발급여부(<input type="checkbox"/> 발급 <input type="checkbox"/> 미발급)	
		직장(사업장)주소		
		근무기간	. . . ~ . . . (. . . 년 . . . 개월)	
	월 평균 소득 (최근 3개월)	. . . 원 (최근 3개월 평균 근로일수 : . . . 일)		
4		취업상태	<input type="checkbox"/> 상시근로자 <input type="checkbox"/> 임시·일용직(피플류, 알뜰부 등) <input type="checkbox"/> 자영업(노점·행상 등) <input type="checkbox"/> 기타	
		직장(사업장)명	※자영업의 경우 사업등록증 발급여부(<input type="checkbox"/> 발급 <input type="checkbox"/> 미발급)	
		직장(사업장)주소		
		근무기간	. . . ~ . . . (. . . 년 . . . 개월)	
	월 평균 소득 (최근 3개월)	. . . 원 (최근 3개월 평균 근로일수 : . . . 일)		

위 사항은 틀림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2016

신청자 : (인)

【붙임 제4호】

『희망두배 청년통장』 금융거래정보제공동의서

금융정보등(금융·신용·보험정보) 제공 동의서

1.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자 인적사항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	

2.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자(신청자, 부모 및 배우자 전원 작성)

관계	동의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금융정보 등의 제공 및 금융정보 등의 제공 사실을 동의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는 것에 동의함(서명 또는 인)
본인		-	
		-	
		-	
		-	

- 희망두배 청년통장 가입자 선정관련 금융재산조사를 위하여 금융기관 등이 신청자 및 정보제공 동의자의 금융정보 등을 서울시, 주소지 자치구, 서울시복지재단에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3. 금융정보등의 제공 범위, 대상 금융회사등 : 뒤쪽 참조

4. 정보를 제공받을 기관명 : 서울시, 주소지 자치구, 서울시복지재단, 우리은행

5. 정보제공 목적 : 희망두배 청년통장 가입자 선정을 위한 금융재산조사

6. 동의서의 유효기간 : 2016. 3. 25. ~ 2016. 8. 31.

2016 년 월 일

서울특별시장·우리은행장·전국은행연합회장 귀하

※ 유의사항 1. 신청자 및 동의자의 자필서명(인감 포함) 또는 무인이 있어야 합니다.

2. 신청자와 동의자의 신분증 앞면 복사본이 첨부되어야 합니다.

※ 신분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공무원증

[뒷면]

< 금융기관 등의 명칭 >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

- 1) 「은행법」에 따른 은행
- 2)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 3)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 4)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증권금융회사·종합금융회사 및 명의개서대행회사
- 6)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및 상호저축은행중앙회
- 7)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과 그 중앙회 및 농협은행
- 8)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
- 9)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및 신용협동조합중앙회
- 10)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금고 및 중앙회
- 11) 「보험법」에 따른 보험회사
- 12)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 13)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 : 전국은행연합회 등

< 금융정보등의 범위 >

1. 금융정보

- 1)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외화예금 등 요구불 예금 : 최근 3개월 이내의 평균 잔액
- 2) 정기예금, 정기적금, 정기저축 등 저축성예금 : 예금의 잔액 또는 총불입액
- 3) 주식, 수익증권, 출자금, 출자지분, 부동산(연금)신탁 : 최종 시세가액. 이 경우 비상장주식의 가액 평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을 준용합니다.
- 4) 채권, 어음, 수표, 채무증서, 신주인수권증서, 양도성예금증서 : 액면가액
- 5) 연금저축 : 정기적으로 지급된 금액 또는 최종 잔액

2. 신용정보

- 1) 대출 현황 및 연체 내용
- 2) 신용카드 미결제금액 등

3. 보험정보

- 1) 보험증권 :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또는 최근 1년 이내에 지급된 보험금
- 2) 연금보험 :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또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액

< 참고사항 >

○ 앞쪽에서 “유효기간”이란 해당 기간동안 조회한다는 의미입니다.

○ 본 금융재산조회 내역은 희망두배 청년통장 가입자 선정을 위한 금융재산조사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되지 아니합니다.

2016년 『희망두배 청년통장』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서울시복지재단은 고객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률 및 법령 상의 제반규정을 준수하여 고객의 권익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 통장사업 대상자 선정, 대상자 및 참여자와의 원활한 상담, 대상자에 대한 지급 서비스 및 관련 정보제공, 통장사업에 대한 통계분석을 위해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으며, 필요시 서울시와 자치구, 사례기관, 통장사업 진행과 관련한 금융기관 또는 협력업체에 개인정보가 공유될 수 있습니다.

◆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 수집항목(필수) : 성명, 주민등록번호, 성별, 학력, 직업, 장애유무, 장애유형 및 등급, 주소,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가구원수, 가구원 성명, 신청인과의 관계, 가구원 주민번호, 가구특성, 소득 및 재산현황, 약정액, 저축액 등

- 수집항목(민감정보): 장애유무, 장애유형 및 등급

- 수집항목(고유식별정보): 주민등록번호

- 기 타 : 추후 사업 진행시 추가적으로 세부 개인정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 서울시 통장사업 운영 기간 및 종료 이후 중복지급 및 분쟁 발생 시 증빙목적이 필요한 기간 동안 보존될 수 있습니다.

◆ 기타 ◆

고객님은 정보제공을 거부하실 수 있으며, 거부할 경우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최소 정보 미비로 통장사업 참여가 불가함을 양해바랍니다.

<정보별 수집 및 이용 동의란>

위 수집항목(필수)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위 수집항목(민감정보)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위 수집항목(고유식별정보)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본인은 상기 내용과 같이 「희망두배 청년통장」 개인정보제공에 동의합니다.

2016 . . .

주 소 :

신청자 : (인)

【신청자 배포용】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신청자가 충분히 숙지할 수 있도록 배포해주시기 바랍니다(용지 앞뒤로 인쇄하여 1장으로 출력 권장).

『희망두배 청년통장』 사업 관련 서울시 복지재단 개인정보 처리방침

서울시복지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은 『희망두배 청년통장 사업』과 관련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가 제공하는 표준 개인정보처리방침에 기초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목적) 재단은 다음의 목적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1. 저소득층 자산형성 지원 사업의 진행
 참여자 선정의사 확인, 참여자의 중복신청 확인, 대상자 선정 및 대상자에 대한 지급 서비스, 저소득층 자산형성 지원 사업에 대한 통계분석, 이와 관련한 각종 고지·통지 등 정보제공, 고충처리 등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2. 고충처리
 대상자 및 참여자의 신원 확인, 민원사항 확인, 사실조사를 위한 연락·통지, 처리결과 통보 등의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① 재단은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또는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 시에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보유합니다.

② 재단은 통장사업 등 저소득층 자산형성 지원 사업의 운영 기간 및 그 종료 이후 중복지급 및 분쟁 발생 시 증빙목적이 필요한 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처리·보유합니다.

제3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① 재단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서 명시한 범위 내에서만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동의,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② 재단은 개인정보를 제3자(금융기관 등)에게 제공할 경우 별도의 동의를 얻고 있습니다.

제4조(개인정보처리의 위탁) ① 재단은 『저소득층 자산형성 지원 사업』과 관련된 개인정보 업무의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 위탁받는 자 (수탁자) : 『저소득층 자산형성 지원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재단과 협약을 맺은 각 사례관리기관
-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 :
 1. 『저소득층 자산형성 지원 사업』과 관련한 참가자들로부터의 개인 정보 수집업무
 2. 위 사업의 성공적인 완료를 위하여 기관이 담당하는 업무와 관련한 개인 정보 이용, 보유, 가공, 검색, 제공 등 기타 개인정보 처리업무 전화상담 응대, 부서 및 직원 안내 등
- ② 재단은 위탁계약 체결 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기술적·관리적 보호 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 ③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5조(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행사방법) ① 정보주체는 재단에 대해 언제든지 다음 각 호의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1. 개인정보 열람요구
 2. 오류 등이 있을 경우 정정 요구
 3. 삭제요구
 4. 처리정지 요구
- ②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재단에 대해 서면, 전화,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재단은 이에 대해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 ③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오류 등에 대한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재단은 정정 또는 삭제를 완료할 때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지 않습니다.
- ④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 ⑤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계법령을 위반하여 재단이 처리하고 있는 정보주체 본인이나 타인의 개인정보 및 사생활을 침해하여서는 아니됩니다.

제6조(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재단은 다음의 개인정보 항목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 수집항목(필수) : 성명, 주민등록번호, 성별, 학력, 직업, 장애유무, 장애유형 및 등급, 주소,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가구원수, 가구원 성명, 신청인과의관계, 가구원 주민번호, 가구특성, 소득 및 재산현황, 약정액, 저축액 등
- 수집항목(민감정보): 장애유무, 장애유형 및 등급
- 수집항목(고유식별정보): 주민등록번호
- 기타 : 추후 사업 진행시 추가적으로 세부 개인정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① 재단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정보주체로부터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를 별도의 데이터베이스(DB)로 옮기거나 보관 장소를 달리하여 보존합니다.

③ 개인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파기절차
재단은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고, 재단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2. 파기방법
재단은 전자적 파일 형태로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도록 파기하며, 종이 문서에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여 파기합니다.

제8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재단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1.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 수립·시행, 정기적 직원 교육 등
2.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고유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 설치
3. 물리적 조치 :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의 접근통제

제9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① 재단은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경영기획실장
 성명 : 김 영 오
 직책 : 경영기획실장
 연락처 :
 - 전화번호 : 02-2011-0400
 - FAX : 02-2011-0500

② 정보주체께서는 재단의 사업을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부서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재단은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지체 없이 답변 및 처리해 드릴 것입니다.

제10조(개인정보 열람청구)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 청구를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 재단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청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처리 부서: 제9조와 같음

제11조(권익침해 구제방법) 정보주체는 아래의 기관에 대해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피해구제, 상담 등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의 기관은 재단과는 별개의 기관으로서, 재단의 자체적인 개인정보 불만처리, 피해구제 결과에 만족하지 못하시거나 보다 자세한 도움이 필요하시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한국인터넷진흥원 운영)
 - 소관업무 : 개인정보 침해사실 신고, 상담 신청
 - 홈페이지 : privacy.kisa.or.kr
 - 전화 : (국번없이) 118
 - 주소 : (138-950) 서울진 송파구 중대로 135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운영)
 - 소관업무 : 개인정보 분쟁조정신청, 집단분쟁조정 (민사적 해결)
 - 홈페이지 : privacy.kisa.or.kr
 - 전화 : (국번없이) 118
 - 주소 : (138-950) 서울진 송파구 중대로 135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 대검찰청 사이버범죄수사단 : 02-3480-3573 (www.spo.go.kr)

- ▶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 1566-0112 (www.netan.go.kr)

제12조(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 ① 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2015. 2. 부터 적용됩니다.

【붙임 제6호】

『희망두배 청년통장』 고용·임금확인서

피고용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주소															
	하 시 는 일 (구체적으로 기재)															
고용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 현재까지 (총 년 개월)															
임금지급형태	일당제	1일 임금 : 원														
		월평균 고용일수 : 일														
	월급제	구분	'153월	'154월	'155월	'156월	'157월	'158월	'159월	'1510월	'1511월	'1512월	'161월	'162월		
		근무일수														
		기본급 (단위 : 원)														
		각종 수당 (단위 : 원)														
		기타 금액 (여비, 차량유지비 등)														
합계 금액 (단위 : 원)																
국민건강보험 가입여부	<input type="checkbox"/> 가 입 <input type="checkbox"/> 미 가 입															
상기와 같이 현재 피고용인이 본 사업장에 고용되어 있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 사 업 장 명 :																
○ 사 업 장 주 소 : ☎ 전화번호 :																
○ 사업자등록번호(고유번호증) : _____																
○ 사 업 주 명 : (사업주 인감)																
○ 작 성 자 : 직 급 성명 (인)																
※ 신청자 본인은 위 내용이 사실임을 서약합니다 신청자 성명 : (인)																
※ 허위사실을 기재하였을 경우 희망두배 청년통장 사업 대상자 선정 제외는 물론, 참여 중에도 언제든지 선정 취소될 수 있고, 추후 서울시·자치구·서울시복지재단에서 시행하는 복지시책사업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붙임 제7호】

『희망두배 청년통장』 일용근로 사실확인서

참 가 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사실 확인 내용 (일용근로 하고 있는 경우, 최근 1년 간 6개월 이상)								
근로기간	년 월	년 월	년 월	년 월	년 월	년 월	년 월	
지급금액	원	원	원	원	원	원	원	
사업장 명								
사실 확인 내용								
1. 상기 본인은 과거에 상기와 같이 일용근로를 한 바 있으며, 현재도 근로를 하고 있음을 신고합니다.								
2. 상기 본인은 상기 사실 확인 내용에 대해 성실히 신고하였으며, 향후 소득재산조사 등을 통해 상기 신고 사실이 허위로 확인되었을 경우, 어떠한 불이익(중도해지 및 본인적립금 외 근로장려금 미지급)도 감수할 것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주 소 :								
전 화 번 호 :								
참 가 자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_____ 구 · 서울시복지재단 귀하								

【붙임 제8호】

[서식1호-공통서식 별지제1호서식] <개정 2012.12.21 >

[1 면]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처리기간	
										별도안내	
<input checked="" type="checkbox"/> 신규(제공)신청 <input type="checkbox"/> 변경신청 <input type="checkbox"/> 연장신청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세대주와의 관계		전화번호				
	주소								휴대전화		
									전자우편		
가족 사항	세대주와 의관계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등거여부 (미동거 사유)	학력재학여부 (학업중 /학원생)	건강상태 (장애 /질병)	취업상태		전화번호 (집/직장)	
								직업	직장명		
※ 배우자 관계 ¹⁾ (<input type="checkbox"/> 법률혼 <input type="checkbox"/> 사실혼 <input type="checkbox"/> 사실상 이혼)											
부양 의무 자 ²⁾	수급자와의 관계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주 소		가구 원수	소 득	재 산	월평균 지원금 ³⁾	전화번호
	의										
	의										
	의										
	의										
신청인의 범위											
공통 본인, 가족, 친족 ⁴⁾ , 사회복지담당공무원 및 기타 관계인											
안 내	기 타 관 계 인	기초생활보장, 기초노령, 한부모가족지원		후견인, 보장시설의 장(한부모가족지원의 경우 보장시설 종사자, 보호대상자 자녀가 재학하는 학교의 교사, 북한이탈주민의 경우 하나원 종사자 포함)							
		영유아보육·유아학비 초·중·고 학생 교육비		후견인,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							
		장애인복지		장애인을 보호하고 있는 장애인 복지시설의 장, 장애인을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 기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이해관계인							
		장애인활동지원		시장·군·구·구청장이 지정한 자							
		청소년지원		청소년보호자, 청소년상담사,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7호에 의한 청소년지도자「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의한 사회복지사, 그 밖의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관계인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바우처)		후견인									

1) 해당자에 한함
 2) 부양의무자 : ①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②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
 3) 월평균지원금 : 부양의무자가 신청자에게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금액
 4) 친족 : 배우자,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신청	
보 장 구 분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내용
<input type="checkbox"/> 기초생활보장	①생계급여 (②교육급여(학비) ③의료급여 ④주거급여(연금/월물) ⑤차별급여(□거상생) ⑥기타()
<input type="checkbox"/> 영유아보육비	□ 양육수당 □ 보육료 지원(0~14개월) □ 유아학비 지원 □ 장애아양육수당 □ 놀이존 양육수당
<input type="checkbox"/>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① 글씨(중·고)비 □ 반납후학교 자유 수강권 ② 고교 학비 ③ 교육정보와 지원(PC, 인터넷통신비)유해재단서비스 PC 보유 유무 : □ 있음, □ 없음 [사용·회망 통신사 : □ KT □ SK □ 브로드밴드 □ LG 유플러스 □ SK 텔레콤 □ 기타()] [인터넷 기업(예정)자 설명 : , 기업(예정)자 주민번호 :]
<input type="checkbox"/> 아동·청소년	□ 소년소녀가장보호비 □ 그룹홈지원(보호비) □ 기타() □ 청소년특별지원 ①생활지원 ②건강지원 ③학업지원 ④지원지원 ⑤상담지원 ⑥법률지원 ⑦활동지원 ⑧기타지원()
<input type="checkbox"/> 한부모가족	□ 아동양육비 □ 추가 아동양육비 □ 교육비(수업료, 입학금) □ 학용품비 □ 생활보조금 □ 청소년학부모 지원금 □ 청소년학부모 아동양육비 □ 청소년학부모 취업촉진수당 □ 청소년학부모 고교생활비 □ 청소년학부모 고교수업비 □ 청소년학부모 자선형상계좌(2010년 기입자에 한함) □ 기타()
<input type="checkbox"/> 장애인복지	□ 장애인연금 □ 배우자등기신청 □ 차상위 부가급여 □ 장애수당 □ 장애아동수당 □ 학비 □ 장애아교육양육지원 □ 기타()
<input type="checkbox"/> 장애인활동지원	□ 활동지원급여 □ 신규신청 □ 갱신신청 □ 변경신청 □ 추가급여 (①인간기 ②화약기구 ③출산 ④학교생활 ⑤직장생활 ⑥차량준비 ⑦보조일시서비스 □ 긴급활동지원
<input type="checkbox"/> 노인복지	□ 기초노령연금 □ 배우자 등기신청 □ 기타()
<input type="checkbox"/> 사회복지서비스이용권 (바우처)이용권	□ 노인돌봄종합서비스 □ 시간제방문서비스 □ 장애인활동보조지원 □ 장애아동가정지원 □ 청소년학부모 아동양육비 □ 청소년학부모 취업촉진수당 □ 노인산후돌봄서비스 □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 □ 노인안락서비스 □ 노인안락서비스 □ 노인안락서비스 (시간제(대상자비), 동일제(대상자비)) □ 서울특별시 청년두레통장
감면 및 연계신청	
기초생활보장수당(대형)	□ TV수신료면제(고객번호 :) □ 전기요금감면(고객번호 :) □ 휴대전화요금 할인(통신사 □ KT □ SK 텔레콤 □ LG 유플러스)
복지서비스신청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 우선돌봄차상위(·소득인정액 최저생계비 120%이하)

급여 계좌	신청내역의 관계	성 명	보장 구분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비고(사유) ⁶⁾
동지방법		□ 서면(필수) □ 추가고지방법 : 전화) 전자우편() 문자메시지서비스() 기타()				

위와 같이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의 제공(변경)을 신청합니다.

신청인(대리 신청인) 성명 :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신청내역의 관계 : (대리 신청의 경우) 배우자 : (서명 또는 인)

신청시 구비서류	추가제출서류
기초생활보장, 기초노령연금, 영유아보육유아학비, ***** 장애인, 장애인연금, 한부모가족, 기타(가정법정후견) 생활비증 보조	1. 신청인(대리 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해당자에 한하며, 대리신청의 경우에는 위임장 및 대리신청인, 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제각등본(가족관계증명서로 부양의무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함) 3. 소득재산 등의 확인에 필요한 서류(임대차 계약서, 급여명세서 등) 4. 건강 진단서(해당자에 한함), 5. 통장계좌번호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6. 수업료 등 납입고지서(학비지원 신청자의 경우에 한함) - 1/4분기 : 수업료납입고지서(신입생인 경우 입학고지서) - 2/4분기 이후 : 해당학교 재학조치 또는 당해 학교 납입고지서(신규신청) - 학원학비 및 직원훈련비 등 납입고지서 7. 특별항소신청의 신청의 경우, 신청사실임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그 밖의 자료(보호자 부재·연락 두절, 학업 중단 등) 8. TV 수신료, 전기요금, 휴대전화요금 영수증(해당자에 한함) 9. 청소년학부모지원금대상자 중 지원촉진수당 신청자 - 취업훈련확인서, 취업확인서, 검정고시학원등록증명자료 , 재학증서 또는 이와 동등한 효력을 가지는 서류 중 하나 이상 제출 10. 노숙인 확인서 등(해당자에 한함), 11. 아이돌봄서비스 신청의 경우 취업증명 서류 12. 장애인양육수당 신청의 경우 장애인양육비 등록 확인서 또는 농업인확인서
노인, 아동·청소년, 기타(타법의료급여), 기타(차상위분위부담 경감, 놀이존양육수당	소득·재산신고서(별지 제1호의2서식)
사회복지서비스이용권 (바우처)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바우처)제공(별지 신청서 별지 제1호의2서식)
제출하는 곳	관할 시 군·구청(읍면 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 단, 기초노령연금 지급 신청자는 국민연금공단에 제출 가능

5) 타법의료급여 등 :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2호부터 제10호에 해당하여 의료급여를 받고자 하는 수급권자
6) 동일보장기구의 계좌가 아닌 경우 사유 기재
7)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5호부터 제7호, 제9호에 해당하여 의료급여를 받고자 하는 수급권자

210mm×297mm(일반용지 60g/㎡(제활용품))

유의사항
1. 보장구분별 처리기한은 기초생활 보장 14일(연장시 30일), 한부모가족 14일, 영유아보육유아학비 30일, 기초노령연금 30일, 장애인활동지원 30일, 장애인연금 30일, 특별청소년 30일, 사회복지서비스 20일, *****이내입니다.
2-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7조 등에 의거 수급자는 변동사항에 대한 신고 의무가 있으므로 ①거주지역세대 구성의 변동, ②부양의무자 유무, 부양능력 및 부양여부, ③수급권자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 ④수급권자의 근로능력취업상태·자활교육 등 자활지원계획수립에 필요한 사항, ⑤기타 수급권자의 건강상태·가구특성 등 생활실태에 현저한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할 보장기관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2-2. 「기초노령연금법 시행령」 제9조 등에 의거 수급자는 변경사항에 대한 신고의무가 있으므로 ①소득 또는 재산의 변동, ②결혼 또는 이혼, 배우자의 사망, ③그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보장기관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3-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9조제1항 및 「의료급여법」 제16조제1항에 의거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 및 근로능력에 변동이 있는 경우 급여가 변경되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0조제1항 및 「의료급여법」 제17조제1항에 의거 수급권자에게 급여가 필요 없게 되거나 수급권자가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거부한 경우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2호에 의거 해외체류기간이 최근 6개월간 통산하여 90일을 초과한 경우 급여가 중지 됩니다.
3-2. 「기초노령연금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의거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정시설 또는「치료감호법」에 따른 치료감호시설에 수용 중인 경우나 행방불명·실종 등의 사유로 사망으로 추정되는 경우 또는 해외체류기간이 180일 이상 지속된 경우와 「장애인연금법」 제15조제2항에 의거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또는 「치료감호법」에 따른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중인 경우 또는 행방불명 또는 실종 등의 사유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 또는 해외체류기간이 180일 이상 지속된 경우 지급이 정지됩니다.
3-3.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3항에 따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2조의 다른 보장시설에 입소한 경우,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치료감호법」, 「치료감호시설에 수용중인 경우, 해외체류기간이 60일 이상 지속된 경우 및 다른 법령에 의하여 활동지원급여를 받고 있거나 받을 수 있는 사람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급자로 선정된 경우와 제42조 및 제43조에 따른 자료의 제출 및 질문·검사요구를 거부·방해·기피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활동지원급여가 중단됩니다
4. 「사회복지사업법」 제44조제1항,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46조제2항, 「기초노령연금법」 제12조, 「장애인연금법」 제17조,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35조 「한부모가족지원법」 제25조의2,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제29조 등에 의거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급여를 받게 한 경우, 장애인연금을 받게 된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한 경우 등에 보장비용을 지급한 보장기관은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급여를 받은 자 또는 급여를 받게 한 자료부터 징수할 수 있습니다.
5. 부정수급으로 적발된 경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49조, 「기초노령연금법」 제22조제3항, 「영유아보육법」 제54조제3항4호, 「장애인연금법」 제25조제3항,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47조 제3항, 「한부모가족지원법」 제29조,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제39조 등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합니다

210mm×297mm(일반용지 60g/㎡(제활용품))

유의 사항

- 6.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35조에 따라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알아낸 사회서비스이용권(바우처) 정보를 보유하거나 이를 사용하여 사회서비스이용권을 사용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동법 제38조에 따라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회서비스이용권을 발급받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사회서비스이용권을 발급받게 한 자, 정당한 권한이 없는 자에게 사회서비스이용권을 판매대여하거나 그 권리를 이전한 자, 사회서비스이용권에 기재된 사회서비스 대신 대가성 금전 등 금품을 받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 7.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의3제3항,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2조·제23조, 「기초노령연금법」제7조, 「장애인연금법」제9조제8항, 제11조제4항,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6항 「한부모가족지원법」제12조의4, ***** 등에 의거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의 제공 여부의 결정에 필요한 조사를 거부, 방해, 기피할 경우 신청이 각하되거나 결정이 취소되고, 급여가 정지 또는 중지될 수 있으며, 「사회복지사업법」제58조제2항, 「기초노령연금법」제23조제1항, 「장애인연금법」제27조에 의거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 8. 장애인연금의 차상위 부가급여를 신청하여 그 대상으로 선정되었으나 위탁심사 결과 장애등급이 경증으로 하락한 경우, 장애인연금 신청일을 기준으로 장애수당을 신청한 것과 동일하게 처리하는데 동의합니다
- 9. 복지대상자 선정 및 관련 법령에 따른 확인조사 시 「사회복지사업법」제6조의2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된 소득·재산, 인적정보 등을 우선 적용 할 수 있습니다.
- 10. 본인은 이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의 가족관계에 관한 증명서 등 인적사항에 대한 사항과 별지 제1호의2서식 “소득·재산 신고서” 기재사항의 확인을 위한 정보조회에 동의합니다.(※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외국인 등록사실 증명서, 토지등기부 등본, 건물등기부 등본 등에 대해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해당 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 11. 시장·군수·구청장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기타 관계기관(한국방송공사, 한국전력공사 등)에서 복지대상자에게 제공하는 각종 검정서비스 등의 신청을 대행하고 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12. 향후 제공 가능한 복지서비스를 받기 위해 복지서비스 연계를 신청하는 경우, 신청을 대행하고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 합니다
- 13. 초·중고 학생 교육비를 제공받기 위해서 본인의 관련 정보를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기타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지정 기관(PC 설치 업체, 인터넷 통신회사)에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14.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을 위해 작성·제출하신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합니다.

동 신청서를 접수한 **시장·군수·구청장**은「**사회복지사업법**」**제33조의3**에 따른 **복지대상자 선정 및 보호 실시의 적정성 확인을 위한 목적**으로 복지대상자에게 필요한 사회복지서비스 및 보건료서비스에 관한 정보, 복지대상자와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근로능력·취업상태에 관한 정보, 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서비스 수혜이력에 관한 정보, 기타 보호의 실시에 필요한 정보로서 금융·국세·지방세, 토지·건물·선박·차량·주택분양권, 국민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보훈급여·공무원연금·군인연금·사립학교교직원연금·별정우체국연금, 일용근로자소득내역·사업자등록증, 장애여부 및 장애의 정도, 고용정보·근로장려금·보건의료정보·노인장기요양보험·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주민등록전산정보·가족관계증명·출입국·병무·교정 등 관련 **정보를 정기적으로 관계기관에 요청**하거나 관련 정보통신망을 통해 조회함에 동의하며, 같은 법 제33조의8에 따라 **복지대상자가 아닌 자로 결정된 시점으로부터 5년간** 보유하고, 그 기간이 경과하면 즉시 **파기함을 고지**합니다.

본인(대리신청인 포함)은 유의사항에 대하여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안내받았으며 위의 내용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리신청인) : _____(서명 또는 인)
 신청인과의 관계 : _____(대리신청의 경우)

【붙임 제8-1호】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 신청서 작성시 첨부서식

금융정보등(금융·신용·보험정보) 제공 동의서

1. 복지대상자 가구 세대주 인적사항

관계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주소
		000000-000000	

2. 금융정보등 제공 동의자(복지대상자 또는 부양의무자)

세대주의 관계	동의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금융정보등의 제공을 동의함 ¹⁾ (서명 또는 인)	금융정보등의 제공 사실을 동의자에게 통보하지 않음 ²⁾ (서명 또는 인)
		000000-000000		
		000000-000000		
		000000-000000		
		000000-000000		

- 1) 복지대상자 선정에 필요한 금융재산조사를 위하여 금융기관 등이 복지대상자 또는 부양의무자의 금융정보 등을 보건복지부장관·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2) 보건복지부장관·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별지 제1호서식 구비서류로 제출된 통장계좌번호의 진위 여부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 금융기관 등이 계좌 명의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3) 금융기관이 금융정보등을 보건복지부장관·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공한 사실을 동의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는 데에 동의합니다.(만일 동의하지 않으면, 금융기관 등이 금융정보등의 제공사실을 정보제공 동의자 개인에게 우편으로 송부하게 됩니다. 단, 기초노령연금의 경우는 별첨서식 「금융정보등 제공 사실 통보요구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만 통보됩니다.)
- 3. 금융정보등의 제공 범위, 대상 금융기관 등의 명칭 : 뒷면 참조
- 4. 정보제공 목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기초노령연금법」, 「영유아보육법」, 「유아교육법」, 「장애인연금법」 및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복지대상자 선정 지원 및 별지 제1호서식 구비서류로 제출된 통장계좌번호의 진위 여부 확인

000000년 00월 00일

금융기관장·신용정보집중기관장 귀하

※ 유의사항 : 동의자의 자필서명(인감 포함) 또는 무인이 있어야 합니다. 다만, 동의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친권자 등 보호자의 자필서명(인감 포함) 또는 무인으로 대신합니다.